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자투자신탁 [채권혼합]

- **변경 사유** : ① 주식운용 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 (강우종)
 ②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
 ③ 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9. 10. 30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19. 4. 25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주식운용 부책임용인력 추가	-	<u>주식운용 부책임용인력 : 강우종</u>
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. 기준	<u>2019. 9. 30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주식운용 부책임용인력 추가	-	<u>2019.10.30 : 주식운용 부책임용인력 추가(강우종)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연혁]	주식운용 부책임용인력 추가	-	<u>2019.10.30 : 부책임용인력 추가(강우종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주식운용 부책임용인력 추가	-	<u>주식운용 부책임용인력 추가(강우종)</u>
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7. 31. 기준	<u>2019. 9. 30. 기준</u>


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주식운용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2019. 7. 31. 기준	<u>주식운용 부책임운용인력 추 가(강우종)</u> <u>2019. 9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 경 내역	주식운용 부책임운용인력 추가	-	<u>강우종 : 2019.10.30~현 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 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집합투자증권 투자대상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반 영	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	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<u>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 익증권</u>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19. 04. 25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19. 04. 25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19. 04. 25. 기준</u>